

공 시 송 달 공 고

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사전통지서 및 정기, 독촉고지서, 방치차량 관련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, 이사불명, 수취인 미 거주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 고 명 : 주·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
(2020년 5월 반송 분)
2. 공고기간 : 2020. 06. 01. - 2020. 06. 16.(15일 간)
3. 송달내용 :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01, ***** 『송*경등 40건』 (붙임 참조)
4. 기타 :
 - 질서위반규제법에 의거 아래의 경우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.
 -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
 - 기초생활수급자, 한 부모 가족보호대상자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국가유공자 (상이등급 3급 이상),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.(단,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제외)
 -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.
 - 과태료부과 처분 후 납부 지연 시 가산금 최고 77%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 - 납부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바라며,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「지방세기본법 제91조」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5. 기타 문의사항은 계룡시 건설교통과 교통팀(☎042)840-2536)

2020년 06월 1일

계 룡 시 장

